

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강원도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신청사”라 함은 강원도의 본청, 시의회,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2.“건립”이라 함은 「건축법」 제 2 조제 1 항제 8 호 ·제 10 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.
- 3.“후보지”라 함은 기존의 도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각 시·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.
- 4.“평가대상지”라 함은 후보지 중 도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.
- 5.“예정지”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제 3 조(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) ①제 5 조에 따른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한 계획(이하“신청사 건립계획”이라한다)을 수립하여 강원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강원도의회(이하“도의회”라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보지, 평가대상지,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
2. 건립대상기관 및 건립규모
3. 건립방법 및 시기
4. 건립에 필요한 비용
5. 5.재원조달방안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(전문기관의 용역)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5 조(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)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,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(이하“공론화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6 조(기능)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전문연구단·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,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,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4.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
5.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

제 7 조(구성)①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·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강원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.

③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경제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도의회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3 명으로 한다.
2. 위촉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7 명, 도의회 의장이 7 명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 8 조(위원의 임기)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

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 9 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①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제 23 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
4.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①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,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위원이 제 1 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위원장의 직무)①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,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(회의)①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구로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13 조(간사)①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 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신청사건립과장이 된다.

제 14 조(전문연구단)①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 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.

②전문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15 조(도민참여단의 설치)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수렴과 예정지 선정에
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둔다.

제 16 조(구성)①시민참여단은 시민,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 명 내외로 지역별·성별 등을
고려하여 구성하며,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
제 17 조(평가대상지 평가)①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
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.

②시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③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평가결과 공개)①시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즉시
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여야
한다.

제 19 조(평가결과에 대한 조치) 도지사는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로
확정한다.

제 20 조(부동산 투기 방지) 공론화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 22 조(의견청취 및 여론수렴)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 23 조(비밀누설 금지)①공론화위원회의 위원·전문연구단의 위원·시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.

②위원장은 제 1 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, 소속 기관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
2. 민간인의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,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조치

제 24 조(예산확보 및 지원) 도지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·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,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25 조(수당 등) 공론화위원회, 전문연구단, 시민참여단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26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론화위원회·전문연구단·시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